

## 4. 일반/특별휴학 및 복학

### ★ 일반휴학

재학 중 개인적인 이유로 다음 학기에 학교를 다니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며, 학사일정에서 정한 휴·복학기간에 학사서비스(GLS)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.

- **등록전 일반휴학**
  - 최종등록기간까지 신청가능하며,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.
- **학기중 일반휴학**
  - 최종등록기간 이후부터 수업일수 3/4선까지,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, 납부한 등록금은 휴학신청 일자에 따라 납입액에서 차등 반환되며 복학 시에 새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  - 분할납부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학기중 일반휴학이 가능합니다. 단,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의 등록 첫학기 휴학은 불가하며 3차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4주이상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예외로 허용됩니다. (소속 대학행정실로 증빙서류 제출)
- **재학 중 사용가능한 일반휴학 학기수**
  - 1회 신청에 휴학가능한 학기 수는 2개 학기이며 한 학기만 휴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  - 재학 중 사용가능한 일반휴학 학기수는 학사과정은 6개 학기(의과대학 8개 학기),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3개 학기(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은 4개 학기), 석박사 통합과정은 6개 학기입니다.
  - 재입학한 학생의 제적 전 휴학 학기수는 재학 중 사용가능한 휴학 학기수에 포함됩니다.
  - 입대휴학 및 특별휴학(임신·출산·육아휴학, 창업휴학)은 사용가능한 일반휴학 학기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.

★ 특별휴학

모성보호를 위하여 임신·출산·육아를 사유로 휴학을 할 수 있으며, 창업 준비나 운영 등을 위하여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.

● 임신·출산·육아휴학

- 1회 신청시 최대 2개 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재학중 총 4개 학기까지 휴학할 수 있습니다. (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만 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 중 1명만 휴학할 수 있습니다.)
-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소속 대학행정실로 제출해야 합니다.
- 등록 중 사유가 발생하여 휴학 신청을 하는 경우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되어 무료복학 대상이 되며 등록금 분할납부자는 잔액을 납부 후 휴학이 가능합니다.

● 창업휴학

- 1회 신청시 최대 2개 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재학중 총 4개 학기까지 휴학할 수 있습니다.
- 창업 증빙, 사업계획서 등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소속 대학행정실로 신청해야 합니다.

★ 일반복학

일반휴학 및 특별휴학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재학하기 위하여 복학 신청해야 합니다. 해당학기 학사일정에 정해진 휴·복학 기간 내 학사서비스(GLS)를 통해 복학 신청이 가능합니다.

● 일반복학자의 등록

- 복학신청하여 승인된 학생은 학사일정에 정한 기간에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.
- 수강신청은 복학 신청 후 등록금 납부 전이라도 가능하며, 등록금 납부는 개강 후에 있는 추가 등록기간까지 가능합니다.

● 일반복학의 제한

- 학사과정 신입학생 중 학과진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휴학한 학생은 반드시 학기를 맞춰 복학하여야 하며, 이 학기가 맞지 않을 경우(\*엇학기 복학) 복학할 수 없습니다.